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79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됨에 따라, 수급희망자가 같은 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에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수당 신청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의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3. 입원,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수급희망자의 동의는 유·무선 등을 활용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동의는 수급희망자의 신청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제25조의2(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 음)
<신 설>	②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의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 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2. 65세 이상 또는 19세 미만인 경우 3. 입원, 장기요양 등의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을 하기 어렵다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인정한 경우
<신 설>	③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수급희망자의 동의는 유 · 무선 등을 활용하여 받을 수 있 다. 이 경우 그 동의는 수급희망 자의 신청으로 본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411